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0. 10. 7.(수) 10:02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김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2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5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52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케이티파워텔(주)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0-50-238)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케이티파워텔(주)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사업자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견진술에 앞서 사실 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을 먼저 보고해 주시고 의견진술 후 사무처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시장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진성철 통신시장조사과장

- 케이티파워텔(주)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케이티파워텔 주식회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6. 시정조치(안)”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케이티파워텔(주)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조사 경위입니다. 조사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사항이었습니다. 피심인은 케이티파워텔(주), 이하에서는 “피심인” 또는 “KTP”라고 하겠습니다. 이첩내용은 피심인의 대리점인 (주)엠지티가 20,000원인 CMC-기업 요금을 보건복지부에 30,000원으로 청구하여 10,000원을 편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비 예산편취 의혹으로 제기된 이용요금 과다청구 행위에 대해 금지행위 해당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점검 결과 먼저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르게 통신요금

청구·수납 등 이용자 차별, 전기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미작성 등 이용약관 절차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주)엠지티는 피심인의 CMC-기업 요금 22,000원에 8,000원을 추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통신요금 1대당 30,000원을 고지·수납하였고, 피심인은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실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기간은 2019년 9월 16일~11월 15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케이티파워텔(주)과 (주)엠지티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4년 9월 1일~2019년 8월 31일까지 5년간의 조사대상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조사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권익위 이첩사항인 MGT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 이외에, KTP의 별도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확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피심인의 대리점인 MGT가 보건복지부에 CMC-기업 요금 22,000원과 유지보수비 8,000원을 더한 30,000원을 통신요금으로 고지한 행위가 위법한 지에 대한 여부, 두 번째 피심인의 대리점인 MGT가 전기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미작성,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통신요금 청구, 이용약관에 따른 절차 미이행한 행위가 위법한 지에 대한 여부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 피심인이 보건복지부 이외 다른 가입자에 대해서도 이용약관 위반 또는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초 사실입니다. 피심인의 사업자 지위는 기간통신사업자와 舊 별정통신사업자 2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심인과 MGT간 대리점 계약현황입니다. 피심인은 MGT와 2008년 11월 24일에 위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년 2월 27일에 무선재판매 관련 사항을 추가 변경하는 등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대리점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MGT와 보건복지부 간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관련 계약현황입니다. MGT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 1>과 같이 보건복지부의 전국 단위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구축·운영 사업”의 수행자로 선정되어 사업비 등에 관한 협약을 보건복지부와 체결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체제입니다.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은 2009년도 최초 사업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사업을 주관하다가 2010년에 보건복지부로 사업이 이관되어 2009년~2017년까지 1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또한 피심인의 대리점인 MGT는 2010년~2017년까지 TRS서비스 4,167대와 LTE서비스 4,056대를 보건복지부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심인 할인제도 운영 현황은 안전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중요 사항 거짓고지 행위입니다. 이 부분은 舊 별정통신사업자 지위로서의 행위입니다. 피심인 대전지사의 ○○○과장은 대리점인 MGT 소속 직원 □□□부장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무선통신망을 TRS서비스에서 LTE서비스로 전환하는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2015년 8월 21일 오전 10시 24분에 <그림 2>와 같이 LTE서비스 월 사용료 22,000원과 단말기 무상교체 조건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MGT □□□부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안서를 받은 MGT □□□부장은 월 이용요금 22,000원에 유지보수비 8,000원을 포함해 총 30,000원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고 있으니 월 사용료를 30,000원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 KTP ○○○과장은 MGT □□□부장의 요청에 따라 <그림 3>과 같이 월 이용요금을 VAT를 포함한 30,000원으로 변경하여 MGT □□□부장에게 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MGT □□□부장은 KTP ○○○과장으로부터 받은 제안서 월 이용요금 30,000원과 단말기 무상교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 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심인 내부적으로는 2015년 8월부터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통신 단말기 4,042대 중 4,000대를 TRS서비스에서 LTE서비스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요금제는 TRS서비스의

CMC-기업 요금 22,000원에서 8,000원을 할인하고, 단말기 할부금 8,000원을 청구하였으며, 약정기간은 국가재난망 도입 완료 전까지 산정하였습니다. 피심인은 MGT에게 이용요금의 단말기 할부금을 포함한 계산서를 발행하고, MGT는 보건복지부에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추진 계획을 내부 결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은 보건복지부 청구지 주소를 2010년 5월 28일부터 MGT 주소지로 변경하여 요금청구서를 보냈고, MGT는 이용요금 30,000원을 받기 단위로 보건복지부에 청구·수납하여 피심인에게 22,000원을 <그림 4>과 같이 납부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피심인은 사실관계 확인없이 MGT의 요구에 따라 22,000원인 CMC-기업 요금을 30,000원이라고 허위 기재한 메일을 발송하였고, 피심인의 대리점인 MGT는 별도로 유지보수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료 외에 별도의 유지보수비 8,000원을 포함하여 30,000원으로 작성된 피심인의 자료를 받아 보건복지부에 고지하여 이용요금, 할부금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거짓으로 고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입니다.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입니다. 「케이티파워텔(주) 무선재판매서비스 이용약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이용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서명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청이 완료되고, “이용약관에 동의”함은 “이용고객”이 본 이용약관을 숙지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간주하며, “이용고객”이 “가입신청서”에 자필 명함으로써 동의에 대한 의사 표시로 간주하고 “가입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을 승낙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신청 시 서류는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여권 사본과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심인의 대리점인 MGT는 보건복지부에 응급의료통신망 주파수 공용통신서비스 3,755대에 대해 해지 및 무선재판매 서비스 4,056대에 대해 신규 가입 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림 5>와 같이 단말기 교체 관련 보건복지부 협조 요청 공문만으로 무선재판매 서비스 가입을 승낙하였습니다. 또한, 피심인은 2015년 2월 15일 삼성전자(주) 무선재판매 서비스 159대, 2015년 10월 23일 서울고속도로(주) 무선재판매 서비스 31대, 2015년 1월 23일 (주)호텔신라 무선재판매 서비스 15대를 별도의 청약서 등으로 무선재판매 서비스 가입을 승낙한 바가 있습니다. <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입니다. KTP와 MGT의 이용요금 과다 청구 건입니다. 피심인의 대리점인 MGT에서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무선통신망과 관련하여 기존 TRS서비스에서 무선재판매(LTE)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10페이지입니다. 이용요금 30,000원, 국가재난망 도입 후 안정화 시점까지 KTP 무선 사용, LTE 통신망 전환 정책에 따른 기존 TRS 단말기의 LTE 단말기 무상 교체 조건으로 MGT □□□부장과 피심인의 대전지사 ○○○과장이 함께 보건복지부에 공동 제안하고, 그 후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감안하여 CMC-기업 요금에서 8,000원을 정액 할인하고 단말기 할부금은 40개월 할부로 월 8,000원 청구하며, 세금계산서는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을 더하여 MGT로 발행하는 내부결재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무선재판매 LTE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MGT는 보건복지부에는 무선재판매 서비스 4,056대에 대하여 월 사용료 30,000원을 청구·수납하고, 피심인에게 이용요금 12,000원과 단말기 할부금 8,000원, VAT 2,000원 등 22,000원을 납부하여 8,000원의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수납하였습니다. 두 번째, 차별적 할인 적용입니다. 피심인은 TRS 및 LTE 가입자의 회선 규모, 이용요금, 약정기간 등 타당한 근거 없이 고객의 요구나 입찰금액에 따라 9,287가입자(86,128회선)에 대해 기본료 또는 사용료 할인을 적용하였고,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경우

전체 총액이나 용역서비스로 계약하면서 사용하는 요금제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에 맞추어 정책할인이나 특판할인을 임의적으로 적용하였으며, 피심인은 무선재판매 서비스 이용약관에 없는 CMC-기업 요금제 27개 가입자 중 삼성전자(주) 등 14개 가입자에 대해서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부일레미콘 등 5개 가입자에 대해서는 무선재판매 서비스 이용약관에 규정한 2년 약정 5%, 주안레미콘주식회사 등 7개 가입자에 대해서는 3년 약정 10%를 적용하고, 보건복지부에 대하여는 무선재판매 서비스 이용약관에 없는 할인을 40%를 2015년 10월 27일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량이용 가입자에게는 맞춤형 요금제를 TRS 이용약관에 반영하였으나, 일반요금제와 부당하게 차별적인 요금과 혜택을 제공하여 이용자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피심인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단말기 할부금 4억 2,521만 6,000원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이용정지 등을 조치하지 않았으나, 다른 가입자의 경우 2015년~2019년까지 요금 연체 단말기 총 151,679대에 대하여 사용 중지하고 총 27,042대는 해지 처리하였습니다. 피심인은 2016년 3월 9일에 보건복지부의 TRS서비스 iDEN 단말기 4,156대 중 100대에 대하여 해지하지 않고 이용요금을 100% 할인하였으며, 운용기한이 2019년 2월 말일까지임에도 조사종료일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이용요금을 100% 할인하는 등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용약관 위반행위입니다. 먼저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입니다. 피심인은 TRS서비스에 대해 舊 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舊 법 제28조에 따라 이용약관을 신고하여야 하나 피심인은 KTP Family-2005 등 TRS서비스 5개 요금제에 대해서 이용약관에 규정하고도 舊 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등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록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舊 별정통신사업자 지위입니다. 피심인은 LTE 서비스에 대해 舊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된 舊 별정통신사업자로서 舊 법 제23조에 따라 이용약관을 등록하여야 하나 피심인은 PTT Smart54 등 LTE서비스 6개 요금제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에 규정하고도 舊 법 제23조 및 舊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등 등록된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특별히 더 확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실 사항이나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의견진술을 요청한 피심인 측 관계자 의견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 한상혁 위원장

- 지금부터 KT파워텔(주)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진술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심인 측 관계자가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심인 관계자 입장)

○ 한상혁 위원장

-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9년 9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사업을 비롯한 KT파워텔의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KT파워텔 주식회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확인하였기에 지난 9월 3일 KT파워텔 주식회사에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처분 실시에 앞서 처분 당사자인 'KT파워텔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참석자 확인하겠습니다. KT파워텔(주)의 김우진 상무님 맞습니까?

○ 김우진 케이티파워텔(주) 경영기획총괄(상무)

- 예.

○ 한상혁 위원장

- KT파워텔주식회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윤주호 변호사님 맞습니까?

○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예.

○ 한상혁 위원장

- 의견진술에 앞서 오늘 의견진술을 위한 자리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처분 실시에 앞서 사전 처분 당사자인 KT파워텔(주)의 법 위반 사유에 대한 소명을 듣고 향후 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모쪼록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KT파워텔(주) 김우진 상무님께서 이번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사안과 관련해 모두 발언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 김우진 케이티파워텔(주) 경영기획총괄(상무)

- 안녕하십니까. 케이티파워텔(주) 경영기획총괄을 맡고 있는 김우진입니다. 먼저 심결에 앞서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에 무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자와 위반사실 조사를 받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사실조사 시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첫 번째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 및 두 번째 이용자 차별과 관련된 요금할인이 발생하였던 무전통신 서비스의 특수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드린 의견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은 당사의 대리점인 MGT가 직접 보건복지부와 입찰계약을 통해 수주한 사업으로 당사에는 보건복지부 통신비 30,000원 중 서비스 요금 20,000원, 유지보수비 1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 서비스 요금을 30,000원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은 당사도 금번 사실조사를 통해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리점에 의한 입찰계약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저희 KTP가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여 재발 방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입신청서를 공문을 대체했던 부분은 그 당시 2014년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비상대응 등으로 업무가 과중했던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른 결정이었으며, 체납 시 사용정지를 하지 않았던 사유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연간 단위로 집행되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이 또한 향후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금할인에 대한 이용자 차별 진입니다. TRS 공급자인 모토로라가 서비스를 종료함에 따라서 2014년에 3세대 TRS에서 4세대 LTE 무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무전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요금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존 저렴한 요금을 원하는 고객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진행된 요금할인이었습니다. 무선 시장에서의 요금할인은 이동통신 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가 아닌 이용자 편익에서 진행되었으며, 타사 전환이나 신규 가입이 아닌 기존 가입자의 요금을 할인함에 따라 당사의 이익을 취한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시장 교란 목적이 아니고 이용자 편익 및 B2B 무전시장 특성에 따라 요금할인이 된 65,000대에 대해서는 전기통신법상 금지행위 적용에서 제외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무전통신 시장은 이동통신과 다르게 업무용 통신이라는 소규모 리치마켓시장입니다. 1991년 11개 사업자로 시작된 무전통신사업은 가입자 정책 그다음에 적자 누적으로 지금 KTP 당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하였으며, 당사는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자 합병, 외산 정비 국산화 등 국내 유일한 무전사업자라는 나름대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무전통신 시장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확대로 무전통신 시장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가입자마저 급감하며 최악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600억원 정도의 규모인 중소 무전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법률대리인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아닙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이 건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김우진 상무님은 “당사도 이번에 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혹시 사무처에서 조사한 조사 결과에 대해 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김우진 케이티파워텔(주) 경영기획총괄(상무)**

- 부당하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신료 30,000원을 보건복지부에 최종적으로 청구한 부분이 저희 직원이 MGT로 메일을 보낸 것에 보면 통신료 30,000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미리 30,000원을 알고 통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서비스 20,000원에 유지보수 10,000원이라는 부분을 듣고 그 직원을 내부에서 조사했는데 그 10,000원이 유지보수비라고 알고 보

냈다고 저희가 진술도 받고 확인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임의로 알고도 이것을 숨기려고 한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무처를 설득 못 시켰네요?

○ 김우진 케이티파워텔(주) 경영기획총괄(상무)

- 예, 그 부분은 설득을 못 했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KTP가 MGT의 행위를 몰랐다, MGT 부장과 KTP 과장과 그런 구체적인 숫자까지 적시해서 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랐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시장조사과에서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 광범위한 자료를 찾고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대리점에서 이런 것이 오고 가고 직접 KTP와 그런 것이 있었던 물증이 나왔는데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해서 어떻게 설득을 시킬 수 있다고 보지요? 복지부의 예산을 이렇게 과다 청구해서 받아낸 국민 세금을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자부심과 책임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해명해 주십시오.

○ 김우진 케이티파워텔(주) 경영기획총괄(상무)

-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그 상황에서 내부에서 여러 번 체크하고 조사했는데 몰랐다는 부분으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회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도 관리를 잘할 것이며, 회사에서도 규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앞으로 잘하겠다고 시스템을 더 꼼꼼하게 만들겠다는 말씀은 감사합니다.

○ 김우진 케이티파워텔(주) 경영기획총괄(상무)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그러나 이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 김우진 케이티파워텔(주) 경영기획총괄(상무)

- 이 부분 행위는 당연히 저희가 인정합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왜냐하면 인정해야 저희들이 처분을 합당하게 내릴 수 있는데 당사자가 계속 부정하거나 '몰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묵인한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이 많이 달라질 경우에는 처분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 김우진 케이티파워텔㈜ 경영기획총괄(상무)

-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여러 번 이 부분 때문에 확인했는데 몰랐다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이 몰랐다고 해서 모른 상황이 될 것이냐고 하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수긍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내부에서도 다시 한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하나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2가지입니다. 몰랐다는 구조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20,000원 요금으로 하자고 공문을 보내니까 곧바로 30,000원으로 해 달라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사자들 간 30,000만원 요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상무님은 우리는 그 30,000원에 수리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KTP는 MGT에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얼마를 받았느냐면 20,000만 받았습니까. 그렇지요?

○ 김우진 케이티파워텔㈜ 경영기획총괄(상무)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러면 KTP의 과장이 30,000원이라고 해 줘서 그것을 근거로 MGT는 보건복지부에서 30,000원을 받아낸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상무님 말씀대로 '우리는 30,000원에 수리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았다'라고 주장하신다면 20,000원을 수령할 것이 아니라 MGT로부터 그 이후에 30,000원을 수령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KTP는 20,000원만 받았습니까. MGT는 보건복지부로부터 30,000원을 받고, KTP는 그 가운데 20,000원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KTP의 상무님 말씀은 그 30,000원은 애초에 운영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했는데, 내부 서류를 보면 운영유지비는 별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와서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대한 정상참작을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추후에 이 문제가 이 위원회 바깥으로 나가서 가령 법정으로 변질 경우에도 KTP가 이 위원회에서 이것을 인정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제가 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지금 구조는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KTP는 아직도 우리는 이제 알았다고, 서류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알았다고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보니까 우리가 알았어야 됐는데 몰랐다, 따라서 우리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우진 케이티파워텔㈜ 경영기획총괄(상무)

-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예를 들어 위증하고 거짓말을 한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알았으면서 이 자리에서 거짓이라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서는 충분히 회사가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수궁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보건복지부 30,000원으로 해 주시면 'MGT에서 30,000원으로 보내주십시오. 서비스로는 20,000원, 유지보수비가 10,000원이 붙습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받아서 저희에게 통보를 알면서 묵인하고 모른 척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는 이 부분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회사가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궁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어려움이 있는 것과 사실 관계와 차원이 다릅니다.

○ 김우진 케이티파워텔(주) 경영기획총괄(상무)

- 수궁하고 회사가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수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요금의 결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과장에게 있습니까? 과장에게 위임된 것입니까?

○ 김우진 케이티파워텔(주) 경영기획총괄(상무)

- 아닙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아십니까? 결정 권한은 누가 있습니까?

○ 김우진 케이티파워텔(주) 경영기획총괄(상무)

- 회사의 요금체계가기 때문에...

○ 김효재 상임위원

- 회사의 요금체계, 그렇다면 만약 요금 결정이 잘못되었다면 과장의 일탈행위인 것인지, 회사 구조에 관한 문제인 것인지도 따져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우진 케이티파워텔(주) 경영기획총괄(상무)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대리점 부장이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그날 오전 10시 몇 분에 한 요구에 대해서 그날 오후 5시에 그대로 해 줍니다. 그것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몇 시간 사이에 KTP 내부에 '우리 대리점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올려주는 것이 마땅하겠다'라는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과장 혼자 대리점 부장과 들어서 주고받은 통신문에 의해 KTP의 공신력 있는 공문서가 나간 것인지, 그 문제는 혹시 따져 보셨습니까?

- 김우진 케이티파워텔㈜ 경영기획총괄(상무)
 - 저희 내부에서 요금이 이렇게 되어서 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 과장의 메일이 나간 것은 확인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으로 계약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KTP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나 기관들과 거래하지 않습니까?
- 김우진 케이티파워텔㈜ 경영기획총괄(상무)
 - 예, 그렇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다른 곳에서도 공문으로 계약을 요청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 김우진 케이티파워텔㈜ 경영기획총괄(상무)
 - 다 가입신청서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원칙입니다. 가입신청서를 공문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상대가 보건복지부….
- 안형환 상임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은 그 당시 세월호 사건 이런 등등으로 말미암아 업무상 바빠서 그랬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세월호와 직접적인 해양수산부도 아닌 부서인데 바빠서 공문으로 계약을 대체했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의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우진 케이티파워텔㈜ 경영기획총괄(상무)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의 공문으로 처리된 부분은 굉장히 예외적인 부분이고, 저희가 가입신청서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국가기관이고 보건복지부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 가입신청서를 받지 않고 공문으로 대체해서 업무처리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추가로 2017년에 감사원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 김우진 케이티파워텔㈜ 경영기획총괄(상무)
 - 예.
- 김 현 부위원장
 - 그러면 그때 당시 MGT와 보건복지부 협약 내용 등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우진 케이티파워텔㈜ 경영기획총괄(상무)
 - 어디 쪽에 구체적인 확인인지...
- 김 현 부위원장
 -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그 내용을 회사 차원에서 파악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 김우진 케이티파워텔㈜ 경영기획총괄(상무)
 - 회사 차원에서 특별히 저희가 파악을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그때 주고받은 것들이 다 검토가 되었습니까?
- 김우진 케이티파워텔㈜ 경영기획총괄(상무)
 - 감사원에서 처음에 감사받을 때도 저희가 자료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내부에서 파악해서 응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정상적으로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그다음에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 김우진 케이티파워텔㈜ 경영기획총괄(상무)
 - 요금 말씀이십니까?
- 김 현 부위원장
 - 예. 요금제를 이용약관에 반영했다면 과기정통부에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우진 케이티파워텔㈜ 경영기획총괄(상무)
 - 예, 맞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우진 케이티파워텔(주) 경영기획총괄(상무)

-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서비스가 저희는 3세대, 4세대라고 이야기하는 TRS 주파수 공용통신서비스를 하다가 LTE 망의 무전사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고객은 동일한 고객이었습니다. 동일한 고객이 서비스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TRS와 LTE를 같이 쓰는, 동일한 고객이 같이 서비스를 쓰다 보니 그대로 요금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요금이 다 신고등록이 안 된 요금을 그대로 사용한 부분이 일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특수한 사항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약관상 20,000원짜리 서비스를 30,000원 받은 것인데 그 부분으로 어찌됐거나 회사 과장이 용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장이 용인해 준 행위가 회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사가 알았네, 몰랐네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의견청취한 내용에 대해 자료제출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오늘 출석한 피심인 측에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진 케이티파워텔(주) 경영기획총괄(상무)

-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위반사항은 즉각 시정조치하고 재발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KT파워텔이 국내 무전시장에서 유일한 사업자인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저희 고객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피심인 측 의견진술인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KT파워텔’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진술인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피심인 관계자 퇴장)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사무처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철 통신시장조사과장

- 위법성 판단입니다. 먼저 관련법 규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지행위 관련 법령

규정입니다. 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5호의 2에서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 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에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리점 행위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 행위 간주 관련 법령 규정입니다. 법 제50조 제2항 제5호에서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계약체결 등을 대리한 자가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해 법 제52조 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지행위에 대한 처분 관련 법령 규정입니다. 시정 조치(안)입니다. 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통위 고시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서 구체적인 과징금 상한액 및 기준 금액 산정 방식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에 대해서는 법 제99조에서는 법 제50조 제1항 각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통위 훈령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제2조에서 구체적인 고발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첫 번째, 중요 사항 거짓고지입니다. 피심인의 대리점인 MGT가 CMC-기업 요금 22,000원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월 이용료 30,000원으로 보건복지부에 고지한 행위는 이용요금, 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행위로서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2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5호의2-나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입니다. 먼저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입니다. 피심인이 보건복지부, 삼성전자(주) 등 4개 사업체에 대하여 무선재판매 서비스 4,261대의 신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 위임장 등 관련 첨부 서류도 확인하지 않고 가입 승낙하고, 가입신청서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5호-나목-3)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입니다. KTP-MGT 이용요금 과다 청구 건에 대해 피심인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무선통신망의 LTE 서비스 전환 시 대리점인 MGT와 함께 CMC-기업 요금을 30,000원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고, 통신요금 청구지를 보건복지부 주소지가 아닌 MGT 주소지로 입력하여 MGT로부터 22,000원을 받고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요금보다 8,000원이 추가된 30,000원의 요금을 청구하도록 한 행위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5호-마목-1)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별적 할인 적용입니다. 피심인이 가입자의 회선 규모, 이용요금, 약정기간 등 타당한 근거 없이 고객의 요구나 입찰금액에 따라 요금을 할인하는 행위,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대해 요금제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에 따라 임의적으로 할인을 적용하는 행위, 가입자에 따라 차별적으로 할인을 적용하거나 연체를 처리하는 행위 등은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2조 및 제1항 [별표 4] 5호-마목-1)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이용약관 위반행위입니다.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입니다. 피심인은 舊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명과 이용요금 등을 이용약관에 반영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르게 (주)올레렌트카 등 11개 가입자에게 KTP Family-2005 등 5개 서비스를 제공하여 “舊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舊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나> 등록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입니다. 舊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전단은 舊 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인가받은 이용약관만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舊 법 제23조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와 이용요금 등을 이용약관을 등록해야 하는 舊 별정통신사업자는 舊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따른 이용약관 위반행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정조치(안)입니다. <가> 시정명령(안)입니다. 피심인에게 법 제5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 시행령 제52조 제1항 [별표 4] 5호 나목 및 마목과 5호의2 나목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첫 번째 금지행위의 중지, 두 번째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세 번째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네 번째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다섯 번째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하고자 합니다. 과징금 부과입니다. 피심인에게 법 제53조 제1항과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6]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피심인이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5호 나목 및 마목과 제5호의2 나목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법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6]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조사대상 기간 중 별정 및 기간사업자별 해당 서비스의 연평균 매출액과 위반행위 관련 가입회선 수, 월평균 매출액, 가입기간 등 관련 매출액 산정이 가능하므로 매출액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부과 상한액입니다. 법 제5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6>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행위는 제47조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 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기간통신 역무의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은 127억 8,300만원으로 부과 상한액은 1억 2,780만원이며, 舊 별정통신 역무의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은 338억 6,700만원으로 부과 상한액은 3억 3,86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준 금액입니다. 법 제5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6]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기간통신 역무에 대해서는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등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합니다. 장기간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한 행위가 발생하여 피해가 중대하지만 TRS 수요자가 주로 기업으로 B2B 시장의 특성상 가입자에 따른 차이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피해범위가 광범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舊 별정통신 역무에 대해서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와 중요사항 거짓고지 등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용요금을 차별적으로 할인해 주는 행위와 다르게 이용요금을 과다하게 받았고 과다 청구기간이 장기간 이루어졌고,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가 중대하지만, 19페이지입니다. 2019년 1월부터 과다 청구를 멈춘 점, LTE 수요자가 주로 기업으로 B2B 시장의 특성상 가입자에 따른 차이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심인의 기간통신 의무 및 舊 별정통신 의무의 부과기준율은 간담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각각 1.5%를 적용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기준금액을 <표 5>와 같이 산정하겠습니다. 기간통신 의무의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0만 5,000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4,569만 5,000원, 舊 별정통신 의무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4억 6,314만 6,000원, 중요사항 거짓고지에 대해서는 1,903만 4,000원을 기준금액으로 정했습니다. 필수적 가중·감경입니다. 피심인의 기간통신 의무 및 舊 별정통신 의무 모두 전기통신 의무에 대하여 이용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중요사항 거짓고지 행위 등 동일한 위반행위로 최근 3년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겠습니다. 피심인의 기간통신 의무와 舊 별정통신 의무 모두 단독사업자 조사로 주도 또는 선도에 해당되지 않고, 위반행위로 시장점유율이 증가되지 않는 등 가중사유가 없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에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최종 과징금입니다.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기준금액의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피심인에게 3억 9,0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에는 과징금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형사 고발입니다. 피심인이 법 제50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법 제99조에 따라 3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위한 고발이 가능하나, 피심인의 행위가 방통위 훈령인 금지행위 고발기준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통보입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사항으로 의결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KTP의 이용약관 미준수 행위 및 변경 등록 또는 변경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붙임>으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피심인 제출의견 및 검토의견, 피심인에 대한 시정조치(안), 관련 법령 규정, 주요 증빙자료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여부, 관계기관 통보 여부 등에 대한 사무처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안건 <가>의 시정조치안에 대한 질의 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KT파워텔 금지행위 위반 사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처분 원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여기에 몇 마디 덧붙여 이 사건이 단순한 전기통신사업 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시정과 과징금 부과로 끝나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통신회사와 통신회사 대리점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이용자 차별금지를 어긴 단순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 사건은 통신회사 일부 업무 담당자와 그 대리점 업무 담당자가 국가 예산 집행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국가 예산을 축낸 사건으로 단순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만 처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 사건을 살펴본 제 의견입니다. 우선 첫째, 이 사건의 구조는 사무처에서 잘 조사한 대로 통신사업자

대리점인 MGT의 담당자가 월 20,000원으로 책정된 무선통신 단말기 사용료를 30,000원으로 해 달라고 공급자인 KTP 담당자에게 요구하고, KTP의 담당자는 이 요금을 그대로 들어 줘서 MGT가 보건복지부에 월 30,000원의 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공문을 만들어 준 구도입니다. 말하자면 월 20,000원짜리 청구서를 30,000원으로 받게 해 달라고 하고 이를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KTP는 그 이후에 월 30,000원이 아닌 20,000원만 받았습니다. 대리점은 30,000원을 받는데 통신 제공업자는 20,000원만 받은 것입니다. 우리 통신시장조사과의 노력으로 이 과정은 소상하게 밝혀졌고, 그 사이에 잘못된 것이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거짓고지를 한 것이니 이와 같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임무는 충실하고 충분하게 수행되었고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편취된 돈이 개인 돈이 아니라 나랏돈이라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KTP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손실된 액수의 국가 예산을 보전해야 하고 그 보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추가로 가려내야 할 의무가 저희 국가기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통신시장조사과에 따르면 이렇게 이루어진 국고손실은 매년 약 3억원, 8년간 23억원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나랏돈 23억원이 누군가의 호주머니 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새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KTP는 MGT에 구상권을 청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간의 문제이고 국가기관은 다음의 2가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통신 대리점인 MGT 대리점의 □□□부장은 2015년 8월 21일 금요일 국가재난망을 이용한 무선통신기 교체작업을 위한 LTE 무선통신망 전환 세부사항이라는 KTP ○○○과장의 추진계획서를 받고 거기에 월 사용료가 20,000원으로 적혀 있자 이 요금을 30,000원으로 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 요청을 받은 KTP의 과장은 그날 오후 5시에 즉각 그 요구대로 월 30,000원으로 수정해서 보냈습니다. MGT는 이 공문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에 월 30,000원의 사용료를 청구합니다. 여기에서 월 사용료의 결정 권한이 KTP 과장에게 있는지, 20,000원 요금을 30,000원으로 올린 결정권이 과장 선에 위임되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누구에게까지 보고되었어야 했는데 보고되지 않은 것인지 추후에라도 이런 잘못을 찾아내 고쳐야 할 의무가 상급자에게는 없었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MGT의 부장은 혼자서 그런 결정을 하고 20,000원 요금을 30,000원으로 해 달라고 했는지, MGT 내부에 누구까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말하자면 나라에서 30,000원을 받아 본사에는 20,000원만 쥐도 된다는 생각을 누구까지 공유하고 있었는지가 밝혀져야 그 책임의 소재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구도, 나랏돈의 행방까지도 밝힐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사건 구조를 잘 아는 것으로 보이는 KTP의 관계자가 감사원에 제보함으로써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MGT와 보건복지부 간 협약에 불법이 있었는지 또는 잘못이 있었는지만 살펴보고 그런 잘못이 없었다고 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러자 그 구조를 잘 아는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에 재차 제보했고 이번에 그 사건을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첩받아서 충실하게 조사한 것입니다. 이제 이 조사가 끝났고,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여기까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예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앞서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피심인 제출의견 내용 중 2015년 LTE 무선서비스 전환 당시에 보건복지부가 세월호 사고, 중동호흡기증후군 등으로 인한 업무과중이 심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가입신청서를 공문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요청하였다라고 기술을 하는데, 2015년 당시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업무과중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가 왜곡되어서 피심인의 의견이 진술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록을 꼭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2차 민원으로 시작되어서 감사원이 복지부 사업비 산정 부적정으로 이미 주의 조치했던 사안입니다. 이미 알려졌고, 또 언론에 보도됐던 사안입니다. KTP 입장에서는 B2B 시장에서 협상을 통한 계약이다, 그러므로 특수성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저한 이용자 차별, 또 기본적 절차를 무시한 이용계약 체결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무처의 시정조치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KTP는 이번 조사결과를 계기로 삼아서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존경하는 김효재 위원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백번 동의 합니다. 사무처의 이번 조사결과 KT과워텔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명백한 이용약관 위반과 또 이용자의 이익저해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舊 별정통신사업자로서는 이용자 이익저해와 중요사항 거짓고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중대한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금지행위 중단 등 시정명령을 내리는 시정조치(안)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을 제보자의 끈질긴 노력과 또 방통위가 이 방대한 자료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이런 거짓과 허위를 밝혀내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사를 끝까지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실을 밝혀내는데 힘써 주신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 굉장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네 분 다 원안 동의 의견이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사건의 본질은 거짓 사실을 고시해서 8,000원 상당의 정부 예산을 어떻게 보면 편취했다고 봐도 무방한 사안입니다. 그 구체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행위 책임을 질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해 볼 문제이지만 그것은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군

가는 그 부분에 대해 살피고 과다하게 지급된 정부 예산을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안 동의 의견대로 처분을 하시되,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결 결과를 통보하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약관 미준수 등 사실 통보하는 것과 덧붙여서 참조사항으로라도 피해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건복지부에도 이런 사실 관계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이 분명히 알려져서 결과에 대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은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분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20-53-239)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법인명은 (주)매일방송이고, 채널명은 MBN이 되겠습니다. 시정명령(안)입니다. 2018년 1월 26일에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 방안 중 미이행 부분을 2021년 4월 말까지 이행하고, 그 결과를 2021년 5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지난 '17년 11월에 재승인 조건을 MBN에 부가한 바 있고, 올해 1월~4월까지 이행실적 접수를 받았고, 2월에 제출결과를 위원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6~7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9월 16일에 점검결과를 보고드렸고, 같은 날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해서 9월 28일에 (주)매일방송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승인 조건 위반사항 및 피심인 의견입니다. 재승인 조건 위반사항은 재승인 조건 <7>번 항목입니다.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재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입니다. (주)매일방송이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 방안은 밑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감사위원회 구성이고, <2>번 사외이사진 개편인데 사외이사진 개편 관련해서는 방송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경영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사로 사외이사진을 개편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매일방송의 재승인 조건 위반사항은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제출한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심인 주요 의견입니다. 2020년 3월 20일 주총에서 선임된 사외이사를 2019년도 이행실적 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시정명령과 관련된 행정소송 1심 내용을 언급하면서 시정명령 판단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021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시 사외이사진 변경하고 재선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기존에 선임된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 선임된 신규 사외이사 김○○

씨는 경력사항을 검토한 결과 방송분야 경력이 전혀 없어서 방송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재승인 조건은 재승인 기간 동안 계속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심인이 2020년 3월에 사외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였음은 명백하고, 방송법 제99조의 규정상 특정 연도의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라서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피심인도 그 이행실적에 포함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피심인이 2021년 3월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취지를 존중하여 사외이사진을 변경·재선임할 예정임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2019년 1월경 동일한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이미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방송산업의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였고, 이에 따라서 변경·재선임 의사만으로 사외이사진이 재승인 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제 개편될 것인지 여부를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명령 통보를 오늘 의결해 주시면 10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심인 제출 의견 등은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매일방송은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제고라는 2017년도 재승인 조건과는 달리 올해 3월 방송 분야 경험이 없는 분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서 해당 조건을 미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외이사진 개편은 매일방송이 스스로 마련해서 제출한 이행방안으로 방통위와 함께 국민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시정명령을 한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위반사항이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방송은 책임 있는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바라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앞서 김창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2019년 1월에 동일한 건으로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이력까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저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네 분 모두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고 저도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2020-53-240~241)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다>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사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에 대하여 편성평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은 ‘방송법 제7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위반한 (주)에스비에스에 대해 과태료 부과(안)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대상기간에 따라 ‘18년도 상반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18년도 하반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합니다. <2> 제안 이유는 방송법 제7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위반한 SBS에 대하여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추진 경과입니다. ‘19년도 3월부터 검증을 시작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중간 하단에 <4> 관련 규정입니다. ‘순수외주제작물’은 방송법 제72조에 의거 방송사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하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의 순수외주제작물 인정기준을 만족하는 프로그램으로 방송법 제7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거 SBS는 순수외주제작물을 매반기 의무비율 32% 이상 편성해야 하며, 방송법 제108조 제1항에 의거 편성비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4페이지 <5> SBS의 위반사항입니다. <가> ‘18년도 상반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SBS의 순수외주제작물에 대한 검증결과 「드라마 스페셜 리턴」은 SBS의 특수관계자인 더스토리웍스가 기존 드라마를 다시보기 형식 등으로 편집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법 제72조 등에 따른 순수외주제작물로 불인정됨에 따라 ‘18년도 상반기 SBS의 순수외주제작물 편성비율이 32.6%에서 31.1%로 조정되어 의무 편성비율 32%에 0.9%p 미달되었습니다. <나> ‘18년도 하반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친해하는 판사님께」는 SBS의 특수관계자인 ‘더스토리웍스’(제작사)와 외주제작사 ‘IHQ’(공동제작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방송법상 정의규정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아 순수외주제작물로 불인정됨에 따라 ‘18년도 하반기 순수외주제작물 편성비율이 32.4%에서 31%로 조정되어 의무 편성비율 32%에 1%p 미달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6>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가> ‘18년도 상반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SBS의 ‘18년도 상반기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 위반비율이 0.9%p로 위반 정도가 5% 이하이고, SBS가 순수외주제작물 편성규제를 최초로 위반한 사례인 점을 고려하여 기준 금액 1,000만원 대비 50% 감경한 5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나> ‘18년도 하반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SBS의 ‘18년도 하반기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 위반비율이 1%p로 위반 정도가 5% 이하이나 ‘18년도 상반기에 이어 ‘18년도 하반기에도 연속으로 위반사항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75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7>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금번 심사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순수외주제작 비율편성 기준을 준수했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SBS의 경우 '18년 상·하반기 모두 편성기준 32%에 다소 미달했다는 점에서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18년 상반기의 경우 최초 위반이라는 점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50% 경감한 안이 적정해 보이며, 하반기의 경우에도 사실은 전반기와 하반기의 위반행위가 2개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행위로 볼 수도 있어서 제 생각은 500만원이 적정해 보입니다만 그것은 소수의견에 그쳤고 다수결의 결과인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외주제작 편성제도는 '91년도에 도입되었고 그다음에 외주제작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 영세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들의 제작환경이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안건이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 위반에 대한 최초 과태료 부과 건으로 인력계약서, 제작계약서와 제작사와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엄격하게 검증하고 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외주제작 환경을 조성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반기별로 순수외주제작물 편성비율을 검증했으면 지금 어려운 형편의 외주제작사에게 제작 기회가 좀 더 돌아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상파방송사도 힘든 상황이지만 영세한 외주제작사들의 상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주제작 편성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 검증해 주기를 반기별로 단축하고 그 외의 모든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주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도 원안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감경이나 가중처벌이 상반기냐, 하반기냐에 따라 서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반비율 조사를 1년 지나서 한 번에 하기보다는 조금 번거롭지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어떤지 앞으로 논란을 줄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0.9%, 1%의 비율을 초과한 위법 여부가 위법 상태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논란이 됐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듯이 상반기 위반과 하반기 위반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위반했고 하반기에 위반했는데 동시에 적발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액수는 물론 많지 않습니다만 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하반기에는 750만원 가중이 되었습니다. 250만원이 가중되었는데, 가중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 보통 이미 관련법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을 위반했을 때, 또 관련법 위반을 해서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반했을 때 그 고의성을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동시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부분에 가중을 주어야 할 것인가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형사소송법에서도 피고인 이익 우선이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청에서는 이렇게 판단이 어려울 때, 여러 위원님들도 굉장히 판단이 어려웠습니다만 결국은 피고인이라는 표현 보다는 행정처분의 대상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그 이익이 우선되는 그런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사무처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서 <제1안>, <제2안>, <제3안>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행정청의 자세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처분할 때 우리가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의 대상자의 이익과 처지를 항상 고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소수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저는 기권을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750만원이 기준금액에서 가중한 것이 아니고 기준금액은 1,000만원이고, 1,000만원에서 앞에는 50%를 감경한 것이고 뒤에는 25%를 감경한 것이니까...

○ 안형환 상임위원

- 본래 따진다면 상·하반기에 같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감경과 가중이 같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것은 재량의 범위에서 판단을 한 것이고 특별히 가중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가중 사유를 적용한 것이 아니고 1,000만원의 기준금액에서 상반기 건은 50% 감경하고, 하반기는 25%를 감경한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측 불가능성 이런 부분과 무관하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쟁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재량 범위 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의견이 기권도 하시고...

○ 김효재 상임위원

- 저는 지난번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제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으니까 다수결에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이지요?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렇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도 동의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할 때 원안 동의 의견이 다수임이 분명해 보이므로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가>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평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는 지역민방에 대한 수중계 편성비율에 방송사의 경영여건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허가차수’에서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경과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3> 주요 개정사항의 <가> 현행 규정입니다. 방송법 제69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에서 지역민방이 다른 1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비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민방의 허가차수에 따라 수중계 편성비율을 차등 고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규정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제점입니다. 방송법령에 따르면 지역민방의 수중계 편성비율은 ‘방송사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 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송프로그램 편성고시는 민영방송의 ‘허가차수’에 따라 편성비율을 정하고 있어 수중계 편성비율이 방송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다> 개정 방향입니다. 지역민방의 경영상태가 현행 수중계 비율 결정 당시인 2005년과 달라지고, 그간 방송환경이 변화된 점을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변경하며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을 지역민방의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으로 설정하고 방송사업 매출액 구간별로 비율을 차등하는 것입니다. <라> 개정안입니다. 먼저 편성비율은 방송사업 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구간의 수중계 편성비율 68%를 기준으로 50억원 구간별로 1%p씩

증가하고 방송사업매출액이 200억원 이하부터는 50억원 구간별로 2%p씩 증가합니다. 방송사업매출액별 수중계 비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서조항입니다. 급격한 수중계 비율 변화로 인한 업계의 과도한 부담·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전년대비 최대 비율 변화를 1%p로 제한합니다. 다음 경과규정으로 지역민방 사업자의 편성계획, 경영전략 수립 등을 고려하여 고시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부터 규정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민방 수중계 관련 편성고시의 현행 규정과 개정된 후의 규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4>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행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편성고시 개정안이 페이지를 보시면 편성고시 제2조 제1항과 그 밑에 제2항이 있습니다. 제1항은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이고, 제2항은 라디오입니다. 편성고시를 개정하면서 나누어진 조문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 제1항 본문에 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이렇게 TV와 라디오를 포함하도록 법인명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2항을 생략하지 못하고 보고서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항을 생략하고 원래는 라디오만 제공하고 있는 2개의 방송사를 새로 편성되는 고시 개정(안)에 법인명을 넣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누락했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조문을 정리 해서 다음 차수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고안건이고 또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받아서 그 이후에 의결안건으로 다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 조문을 수정 해서 받아주시면 저희가 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어떻습니까? 조문을 봐야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번 수정된 조문을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수정 보완해서 다시 보고안건으로 상정해 주시면 한 번 보고 그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죄송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것은 차기 회차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 11시 24분 폐회 】